

방화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rson and Countermeasure

정기성[†]

Gi-Sung Jung[†]

전북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담당
(2005. 5. 4. 접수/2005. 6. 7. 채택)

요약

최근 들어서도 자신의 생활고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연쇄방화, 특히 차량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방화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화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화범죄에 대한 관심도는 관련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방화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방화방재를 예방·진압하는 소방기관에도 아직 방화범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앞으로도 방화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가 각박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침예화되면서 사회에 불만을 가진 자들에 의한 방화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화범죄에 대응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ABSTRACT

Nowadays, the arson is not common interest happening. the arson has been handled with a crime of violence along with murder, robbery and rape, because of being detrimental to the public clam. but the arson a has not been made award of a serious social problem. There is a rise in the control possibility according to a level of national concern. we have known that the last fire accident of the Daegu underground It took a heavy toll of lives and the property due to our no interest in arson. The government and regional self governing community have fully aware of the serious of the arson so that we can make arrangement for overall measures.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make up for legislation and systematize to correct a defect but also there is uniting the countermeasure system of the organs. The government establish particular research institution of the arson to consider a useful countermeasure.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should develop the investigation technique to arrest an arsonist. The relevant post strengthen the public relation to bring up a private organization of fire prevention in order to prevent the arson to try the government best.

Keywords : Arson, Arson crime, Pyromania, Prevention of arson, Arson investigation

1. 서 론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중앙로역 구내에서 50대 남자가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12량의 지하철 객차를 빼대만 남긴 채 모두 태워버린 대형참사가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50대 중반의 한 정신지체장애인인 자신이 신병을 비관하다 판단착오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화범은 대구광역시 중구 남

산동 명덕역에서 지하철을 탄 뒤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성내동 중앙로역에서 열차가 시행하는 틈을 타 갑자기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열차는 완전히 불에 타 빼대만 남았고, 중앙로역 전장과 벽에 설치된 환풍기, 철길 바깥쪽 지붕들도 모두 녹아 내려 역구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출근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타고 있어서 인명피해도 엄청나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킨 원인은 단순하게도 정신지체장애인인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며 던진 휘발유가 들어있던 플라스틱통이

[†]E-mail: jgskor@hanmail.net

었다. 이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는 우리에게 방화범죄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최근 들어서도 자신의 생활고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연쇄방화, 특히 차량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방화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화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가 각박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첨예화되면서 사회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 방화광에 의한 방화는 증가할 것이며,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이 엄청난 피해를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방화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화범죄에 대한 관심도는 관련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방화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기관이나 방화학재를 예방하는 소방기관에도 아직 방화범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화범죄에 대응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방화범죄의 피해의 심각성을 관련기관의 통계를 통해 분석해 본 다음, 방화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방화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해 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방화범죄의 개념과 특징 실태

2.1 방화범죄의 개념

방화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방화범죄는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구 유럽에서는 방화를 특히, 보험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여 Arson(방화죄)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Incendiaryism(방화) 또는 방화조사적 측면에서 Malicious Ignition(악의있는 점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오랜 역사를 가진 범죄이다. 그러나 방화범죄를 어떤 성질의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연혁상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재에 이르기까지 입법례에 따라 그 태도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원래 로마법에서는 방화죄를 살인죄의 일종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게르만법에서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범으로 과악하고 있었다.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방화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이래 1851년 프로이센형법은 이를 공공위험죄로 규정하였다. 독일형법, 오스티리아형법 및 스위스형법이 방화죄를 공공위험죄의 장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프로이센형법을 모범으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방화죄를 재산범죄, 특히 손괴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미국의 모범형법전은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장에 방화죄를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형법도 이를 손괴죄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¹⁾

2.2 방화범죄의 특징²⁾

방화범죄의 일반적 특징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범죄라는 점이다. 누구나 손쉽게 라이터, 성냥 등 발화물건을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연성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방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화가 발생하였을 때 방화여부를 인지하는 것과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방화범죄의 대표적 특징이다. 화재는 대부분 물질성질과 형태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방화범죄 수법이 교묘하고, 강한 연소물이 있는 장소, 대형 화재일수록 화재원인이 방화였음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범인 체포가 어려운 범죄로 화재에 의하여 지문이나 혈흔, 범죄에 사용된 도구 등 물적 증거가 대부분 멀실되기 때문에 범인체포는 물론 체포된 범인의 공소유지와 유죄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방화범죄는 그 발생이 불규칙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날씨나 온도, 습도, 시간, 계절적인 요소 등에 많이 좌우되고 일정한 화재 패턴을 보이지만 방화는 그 발생이 비규칙적이다.

방화는 그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 원인으로는 불만해소, 가정불화, 정신이상, 싸움, 비관자살 등이나, 이외에도 경제적 이득,³⁾ 범죄은폐,⁴⁾ 범죄

¹⁾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p. 467.

²⁾이상현, 범죄심리학(제4판), 박영사, 2004, p. 311 이하 참조; 노계완, “방화범죄의 실태 분석과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9-10 참조.

³⁾경제적 이득과 관련한 방화범죄란 보험금을 노리고 경제성이 없거나 무가치한 자신의 건물, 시설 등에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방화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⁴⁾범죄은폐 목적 방화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등과 같은 범죄후 범죄현장 및 증거를 숨기거나 멀실시키기 위해 방화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다.

수단,⁵⁾ 악희목적(vandalism),⁶⁾ 선동,⁷⁾ 방화광(pyromania)⁸⁾ 등 매우 다양하다.⁹⁾

방화범죄의 피해적 특성으로는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이 어렵다는 점이다. 방화는 대부분 치밀한 계획하에 은폐된 공간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조기 발견이 힘들고 휘발유나 신나, 알콜, 폭발물, 가연성 가스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범위가 넓다.

방화범죄는 초범자가 많고 공범자가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만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 범죄에 있어서는 공범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제기되고 있다.¹⁰⁾ 그러나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에 의하면, 2003년도 방화범죄의 전과횟수 구성비는 전체 1,426명 중 초범이 333명으로 23.4%를 차지하고 있고, 1범이 184명으로 12.9%, 2범이 164명으로 11.5%, 3범이 139명으로 9.7%, 4범 이상이 487명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어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4범 이상의 전과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¹¹⁾ 또한 방화범죄자의 나이에 따른 공범유무를 살펴보면, 2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자가 공범이 없는 단독범죄자가 많으며,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다른 범죄자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방화범의 인격적 특성으로는 방화범은 이상성격이나 이상심리에 원인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 행위는 병적인 기분이 변성인격의 정후로부터 여겨지기도 하고 향수나 복수의 심적 복합체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간질성 발작과 성적 흥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¹³⁾

특히 범죄학상 방화범은 강박신경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방화광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불을 지르는 행동은 방화벽이 있는 사람이나 방화광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방화광들은 성적인

장애에 인하여 방화행동을 반복한다고 한다. 방화의 원인적 뿐만 아니라 성적 장애와 소변장애라는 사람도 있고,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도 있으며, 불의 파괴성이 가학성을 자극하므로 방화자의 성 요구의 반영이라는 학자들도 있다. 또한 성적 흥분과 방화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화광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발화되어 불꽃이 점점 거세어 질수록 스릴, 성적인 흥분과 자극 그리고 성적 충동에 휩싸인다고 하는 대답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¹⁴⁾

3. 방화범죄의 실태

3.1 최근 10년간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최근 10년간 원인별 화재발생순위를 보면, 방화범죄는 전체 화재원인의 3위를 차지하면서, 1994년 이후 다수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2003년도 전체 화재현황

전체 화재발생 건수 중 2003년도 방화건수를 보면, 3,219건으로 전체화재의 10.3%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911명으로 전체사상자 2,836명의 32.2%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피해는 15,151백만원으로 전체재산피해의 10.0%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방화범죄로 인한 피해는 발생건수에 비하여 그 정도가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고, 방화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3 2003년도 월별·시간별·장소별 방화발생 현황

3.3.1 월별 발생현황

2003년도 월별 방화발생현황을 보면, 2월에 321건으로 전체 방화화재의 10.0%를 보이고 있다.

⁵⁾ 범죄수단의 방화는 살인, 협박, 공갈 등의 범죄수단으로서 불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⁶⁾ 악의목적 방화란 일종의 문명사회에 대한 반발심리로서 불특정인의 재산이나 기물을 불을 놓아 소훼하고 만족감을 추구하는 유형의 방화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연쇄방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⁷⁾ 선동에 의한 방화는 정치분쟁과 노사문제의 제기를 위한 방화를 말하는데, 과거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던 방화이다.

⁸⁾ 방화광에 의한 방화는 단지 스릴이나 쾌감, 때로는 성적 만족 등 감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방화는 경우를 말한다.

⁹⁾ 방화범죄의 동기에 대한 분류는 계획적(이익편취, 원한 및 보복, 투정수단), 우발적(현실불만, 가정불화, 호기심충족), 습관적(방화광)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평일, “방화범죄의 분석과 정책방향”, 방재와 보험, 한국화재보험협회, 1998, p. 8 참조).

¹⁰⁾ 최인섭/진수연,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p. 77.

¹¹⁾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4, p. 64.

¹²⁾ 박형민,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8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1/2월호, p. 31.

¹³⁾ 이상현, 앞의 책, p. 319.

¹⁴⁾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4, p. 91.

표 1. 최근 10년간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구분 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원인	건수	원인	건수	원인	건수	원인	건수	원인	건수
2003	전기	10,670	담뱃불	3,316	방화	3,219	불 티	2,061	불장난	1,274
2002	"	11,202	"	3,847	"	2,778	"	2,251	"	1,170
2001	"	12,300	"	4,445	"	2,709	"	2,464	가스	1,479
2000	"	11,796	"	4,303	"	2,559	"	2,179	불장난	1,696
1999	"	11,204	"	4,256	"	2,434	"	1,910	"	1,835
1998	"	10,897	"	3,856	"	3,056	불장난	1,938	가스	1,827
1997	"	10,075	"	3,626	"	2,655	불 티	1,757	불장난	1,566
1996	"	10,007	"	3,496	"	2,577	불장난	1,783	불 티	1,648
1995	"	9,307	"	3,072	"	2,106	"	1,844	"	1,550
1994	"	8,619	"	2,490	"	1,824	불 티	1,497	불장난	1,313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 2004, p. 39.

표 2. 2003년도 전체 화재현황

구 분	발생건수 (비율 %)	인명피해		재산피해 (백만원)
		사망	부상	
총 계	31,372	744	2,089	151,590
전기	10,670 (34.0)	76	365	49,898
담뱃불	3,316 (10.6)	27	150	4,728
방화	3,219 (10.3)	361	550	15,151
불티	2,061 (6.6)	26	80	12,036
가스	981 (3.1)	27	191	2,581
불장난	1,274 (4.1)	8	37	1,458
아궁이	572 (1.8)	6	20	991
난로	395 (1.3)	10	35	2,299
유류	358 (1.1)		70	1,316
성냥·양초	266 (0.8)	6	35	942
기타	8,260 (26.3)	197	556	60,190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 2004, p. 3.

표 3. 2003년도 월별 방화발생 현황

월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219	263	321	310	285	285	232	220	230	230	301	261	281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 2004, p. 35 재구성.

표 4. 2003년도 시간별 방화발생 현황

시간대 원인별	계	23~01	01~03	03~05	05~07	07~09	09~11	11~13	13~15	15~17	17~19	19~21	21~23
방화	3,219	523	643	592	257	93	98	101	130	145	148	195	294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 2004, p. 35 재구성.

3.3.2 시간별 발생현황

2003년도 시간별 방화발생현황을 보면, 01~03시에 643건이 발생하여 전체 방화화재의 20.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화재에 비하여 방화위험은 오후에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취약시간대는 심야시간(21:00~03:00)으로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3.3.3 장소별 발생건수

최근 5년간 장소별 방화화재를 분석해보면, ① 차량이 1,113건으로 전체 방화의 34.6%를 차지하였고, ② 주택·아파트는 933건으로 전체 방화의 29.0%를 차지하고 있다. ③ 점포는 166건으로 전체 방화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④ 음식점은 143건으로 전체 방화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⑤ 공장·작업장은 106건으로 전체 방화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3.4 2003년도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3.4.1 인명 피해 현황

2003년도 월별 인명피해현황을 보면, 2월에 사망 207

표 5. 최근 5년간 장소별 발생건수

구 분	총화재건수 (A)	방화건수 (B)	접유율 (%) (B/A×100)
계	31,372	3,219	10.3%
차량	6,049 (19.3%)	1,113 (34.6%)	18.4%
주택·아파트	8,474 (27.0%)	933 (29.0%)	11.0%
점포	1,698 (5.4%)	166 (5.2%)	9.8%
음식점	2,056 (6.6%)	143 (4.4%)	7.0%
공장·작업장	3,416 (10.9%)	106 (3.3%)	3.1%
호텔·여관	317 (1.0%)	50 (1.6%)	15.8%
사업장	457 (1.5%)	36 (1.1%)	7.9%
창고	675 (2.2%)	31 (1.0%)	4.6%
학교	243 (0.8%)	20 (0.6%)	8.2%
시장	48 (0.2%)	6 (0.2%)	12.5%
선박	88 (0.3%)	2 (0.1%)	2.3%
기타	7,851 (25.0%)	613 (19.0%)	7.8%

명, 부상 186명으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보이고 있다.

3.4.2 시간별 인명피해 현황

2003년도 시간별 방화로 사망·부상자현황을 보면, 09~11시 사이가 사망 202명, 부상 178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4.3 장소별 피해현황

2003년도 장소별 방화발생 현황을 보면, 차량에서 사망이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상은 주택에서 227명으로 가장 많았다.

3.5 2003년도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 현황

3.5.1 재산피해 총괄

2003년도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 총괄현황을 보면, 주택의 재산피해가 2,489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액으로 나타났다. 주택에 재산피해가 많은 것을 가정불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5.2 월별 재산피해 현황

2003년도 월별 재산피해 현황을 보면, 2월에 5,697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표 6. 2003년도 월별 인명피해현황

월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망	361	13	207	21	17	7	5	13	11	16	14	15	22
부상	550	22	186	37	30	35	22	32	34	58	43	20	31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 2004, p. 48 재구성.

표 7. 2003년도 시간별 방화 사망·부상자현황

계	23~01	01~03	03~05	05~07	07~09	09~11	11~13	13~15	15~17	17~19	19~21	21~23	
사 망	사 망	부 상	부 상	사 망									
361	550	14	78	27	50	17	31	12	26	11	15	202	178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 2004, p. 50 재구성.

표 8. 2003년도 장소별 방화발생 현황

장소 피해	유 홍 음 식 점	음 식 점	여 관	아 파 트	주 택	병 원	복 지 시 설	학 교	사 찰 교 회	공 장	작 업 장	사 업 장	공 공 건 물	점 포	건 물 기 타	차 량	기 타	계
사망	1	9	9	20	77		1			5	1	1	1	3	1	223	9	361
부상	4	21	22	59	227	1		2	1	4	3	5	2	10	11	167	11	550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 2004, p. 47 재구성.

표 9. 2003년도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 총괄

단위: 백만원

계	유 홍 음 식 점	음 식 점	시 장	여 관	아 파 트	주 택	병 원	복 지 시 설	학 교	사 찰 · 교 회	공 장	작 업 장	창 고	사 업 장	공 공 건 물	문 화 재	점 포	지 하 가	건 물 기 타	선 박	차 량	기 타
15,151	188	632	5	146	517	2,489	8	15	14	24	706	355	142	153	118	2	804	3	738	1	7,332	758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 2004, p. 60 재구성.

표 10. 2003년도 월별 재산피해

단위: 백만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151	763	5,697	1,009	750	1,089	646	735	917	788	1,199	687	869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 2004, p. 61 재구성.

표 11. 최근 5년간 피해총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율
건 수	2,432	2,559	2,709	2,778	3,219	1.8%
사 망	99	122	120	105	361	48.3%
부 상	270	274	306	313	550	17.0%
재산피해 (백만원)	7,878	7,542	8,358	8,184	15,151	14.9%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 2004, p. 93.

3.6 최근 5년간 방화피해 현황

3.6.1 최근 5년간 피해총괄

최근 5년간 화재발생 추세를 보면, 매년 평균 1.8% 가 증가하고 있다. 2002년 대비 15.9%가 증가하였고, 1999년 대비 32.4%가 증가하였다.

인명피해를 보면, 매년 평균 사망은 8.3%가 증가하였고, 부상은 17.0%가 증가하였다. 2002년 대비 인명피해는 사망이 243.8% 증가하였고, 부상은 75.7%가 증가하였다. 1999년 대비 인명피해는 사망이 264.6% 증가하였고, 부상은 103.7%가 증가하였다.

재산피해를 보면, 5년간 매년 평균 14.9%가 증가하였고, 2002년 대비 재산피해는 85.1%가 증가하였다. 1999년 대비 재산피해는 92.3%가 증가하였다.

3.6.2 5년간 원인별 건수

최근 5년간 방화원인별 순위를 보면, ① 불만해소, ② 가정불화, ③ 정신이상, ④ 싸움, ⑤ 비관자살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 5년간 증감 추세를 보면, 불만해소의 경우 연평균 40.9%가 증가하였고, ② 비관자살의

표 12. 최근 5년간 원인별 건수

구 分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율
계	2,434	2,559	2,489	2,778	3,219	1.9%
가정불화	264	265	280	277	301	-5.7%
비관자살	58	69	73	55	110	12.1%
정신이상	150	105	101	118	150	9.1%
싸움	95	132	86	102	142	8.8%
불만해소	183	406	254	235	499	40.9%
기타	1,684	1,582	1,695	1,991	2,017	-0.1%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 2004, p. 94.

경우에는 연평균 12.1%가 증가하였다. ③ 정신이상의 경우에는 연평균 9.1%가 증가하였고, ④ 싸움의 경우에는 연평균 8.8%가 증가하였다. ⑤ 가정불화는 연평균 5.7%가 감소하였다. 이상과 같이 방화범죄의 대부분은 재산적인 이득이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이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죄라는 점이다. 따라서 방화범죄를 그 동기간으로 볼 때에는 재산침해적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폭력성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물론 방화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방화가 예측하지 못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재산침해적 범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대책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는 동기와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¹⁵⁾

¹⁵⁾박형민, 앞의 논문, p. 33.

4. 방화범죄에 대한 대책

4.1 입법적 · 제도적 개선

4.1.1 방화범죄의 법정형

현행 형법의 경우 살인죄를 제외하고 각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방화범죄는 이에 비하여 법정형이 가볍고, 각 범죄의 예비·음모죄의 법정형과 관련해서도 살인죄나 강도죄보다 방화관련범죄는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¹⁶⁾ 또한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상습범 및 다른 형과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방화범죄는 정신병질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자격정지와 같은 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통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정한 형벌의 부과와 균등한 형벌을 양형의 목표라고 본다면, 방화죄나 준방화죄의 경우 피해의 정도나 위험성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상응하는 법정형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적정한 형벌의 규정과 부과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더불어서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방화를 범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른바 ‘보험사기’가 성립하는데, 방화행위만으로는 사기의 예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시에 사기죄의 실행이 착수가 있고, 보험금 수령시에 기수가 된다.¹⁷⁾ 따라서 보험금이 청구에 이르지 못한 경우나 보험금목적의 방화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사기 등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의 경우 경제범죄의 성격도 띠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방화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¹⁸⁾

4.1.2 방화범죄 대응법제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에 기인한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한 방화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방화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 ·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소방기본법’에는 방화범죄와 관련한 대응방안에 관한 입법적 대책이 전무한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소방법령상 소방대상물은 방화범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상물로서 환경, 용도, 규모 등에 따라서 위험성은 다르지만, 방화범죄가 비교적 쉬운 공동주택, 음식점, 복합빌딩과 발생 건수는 적지만 화재 확대시 피해가 큰 백화점, 호텔, 병원 등은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므로 연쇄방화사건 등 문제가 될만한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¹⁹⁾

현재 방화범죄 대응체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화범죄 발생시 이를 수습하는 공식적인 대응계획이나 전담조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즉 소방과 경찰,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정확한 수습체계를 갖지 못하고 제각기 활동하고 있다보니 방화범죄의 발생에서 종료까지 모든 책임을 전담하여 수습할 확실한 주체가 없다.²⁰⁾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방화범죄를 단지 재산에 관한 소유의의 범죄유형으로 치부해 왔으나, 1978년에 ‘화재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the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을 개정하고, ‘방화범죄에 대응하는 연방프로그램’(Federal Programs to Combat Arson)이라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방화범죄의 통제를 위해 보다 풍부한 자금지원을 보장하였다. 이 연방프로그램을 통해 화재행정을 지원하고 방화범죄의 발견기술을 발전시키고, 방화범죄에 대비한 훈련 및 지식을 제공하고, 방화범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한편 방화문제에 대하여 대중을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개발을 통하여 범국가

¹⁶⁾현행 형법의 경우 살인죄(제250조)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강도죄(제333조)와 강간죄(제297조)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강도죄(제335조), 준강간죄(제299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화죄(제164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준방화죄로 분류되고 있는 진화방해죄(제169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가스·전기 등 방류죄(제172조의2)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살인예비음모죄(제255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강도예비음모죄(제343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화예비음모죄(제175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¹⁷⁾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04, p. 437;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법문사, 2003, p. 359.

¹⁸⁾최인섭/진수연, 앞의 책, p. 105.

¹⁹⁾노계완, 앞의 논문, p. 53.

²⁰⁾노계완, 앞의 논문, p. 54.

적인 통계수집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보완·실행하였으며 방화범죄의 방지 및 검거를 위한 연방 및 주·지방공무원 등을 보조하는 지침서를 개발하도록 하였다.²¹⁾ 또한 FBI에 의하여 방화범죄는 1급 범죄(part 1 crime)로 분류되고, 1982년에 ‘방화단속법’(The Arson Act)을 제정하면서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²²⁾

4.2 방화범죄에 대한 대응체제 개선

4.2.1 대응조직 구성

방화범죄에 대한 대응조직은 크게 ① 방화범죄 대응 행정을 국가사무로 간주하여 중앙정부에서 모든 대응 정책을 입안·수행하고 그 책임을 지는 형태, ② 방화 범죄 대응행정을 완전히 지방자치사무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는 형태, ③ 중앙정부에 방화범죄 대응조직을 갖추되 실질적인 대응활동은 광역행정단위로 구성된 전담조직에 의하여 이뤄지는 중앙집권 방식과 지방분권 방식을 혼합한 형태, ④ 중앙정부에 방화범죄 대응조직을 두되 실질적인 대응 활동은 완전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성된 전담조직에 의하여 이뤄지는 중앙집권 방식과 지방분권 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²³⁾ 이러한 각 대응조직체계는 장단점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안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방화범죄 대응조직의 조직화 방향도 방화범죄 위험성 제거와 제거 기술향상·방화범죄 예방을 향상 및 투입비용 절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관리할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방화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중앙정부에서는 방화범죄관련 기획업무와 연구, 교육, 정보센터 등을 중심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실제적 집행적 성격이 있는 업무는 하부 기관에 대폭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 설치·운영하기 힘든 방화범죄 대응조직의 구성원에 대

한 교육이나 감식장비, 방화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감지 장치, 각종 분석기기 및 과학적 수사기법 등 개발과 발전에 필요한 교육 및 연구기간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예컨대 영국의 소방대학은 광범위한 교육과 정과 범위, 규모 면에서 세계최고수준을 자랑하며 일본 또한 소방연구소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²⁴⁾

또한 방화범죄 방지 및 상황발생시 대응과 조정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전활동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나 업무활동을 시스템화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조직화이며, 방화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또한 경영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사회(조직)생산의 증가, 양질의 서비스(생산기반 보호) 제공, 비용절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²⁵⁾

4.2.2 방화범죄 관련 전문연구기관 육성

불특정다수인이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방화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조치 기술을 포함하는 방화범죄 대응지식 향상교육과 훈련, 방화범죄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각종 과학적 예측방법의 개발과 자동경계·탐지설비 보급, 신속·정확한 상황대응을 위한 통신 설비 등 관련시설의 구비가 이루어져야 한다.²⁶⁾

방화범죄가 인하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피해와 그 범죄수법이 점점 교묘하고 치밀화 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잠재된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부족과 전문기관 부재, 법과 제도 미비 등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화범죄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기관의 설립을 통해 미래 발전적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2.3 대응체제 일원화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기관 및 경찰기관 내에 방화를 위한 전담기관이 없고 방화에 대한 관심도 미비하기 때문에 기관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

²¹⁾ 이에 대한 내용은, 이기진, “방화범죄와 그 대응방안”, 충북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54-55 참조.

²²⁾ 방화범죄와 관련한 미국의 연구에 대해서는, 최종태, “방화범죄의 실태와 대책·관심도와 동기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경호경비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1997, p. 376 참조.

²³⁾ 노계완, 앞의 논문, p. 57.

²⁴⁾ 노계완, 앞의 논문, p. 59. 이 밖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시와 주에 기동합동연구반(The arson task forces) 등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동경소방청에 방화화재예방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전문적인 방화대책연구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여개의 보험관계회사가 합동으로 방화화재에 대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다(최종태, 앞의 논문, pp. 397-399 참조).

²⁵⁾ 노계완, 앞의 논문, p. 58.

²⁶⁾ 노계완, 앞의 논문, pp. 61.

다. 또한 방화범죄는 민·관의 여러 기관의 이해가 종합되어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집단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단일지휘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방화범죄 대응기관은 광범위한 대량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상황발생시 응급대책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보고되는 많은 정보를 엄정하게 취사선택해야만 상황대처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²⁷⁾

4.2.4 정보운영 네트워크 구성

방화범죄는 자칫 대량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만약 대규모 방화범죄로 전기, 통신케이블, 무선전화기 기지국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한다면 혼란한 재난현장에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이 중요하다. 대부분 죄악의 상태로 진행되는 재난 현장에서 유효한 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각각의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첫째, 위성통신, pc통신, 핸드폰, 발신자 위치 자동추적시스템, 무선fax, 노트북에 연결한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실사화면 전송과 화상정보 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와 방화범죄 대응 공동주파수 사용협약 등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방화의 피해 확대를 막고 구난구호, 피해복구, 범인검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피해정보 수집, 정리, 전달, 분석, 운영 등을 단일 선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지휘망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방화범죄와 관련된 학과가 설치되어 있거나 연구를 진행 중인 대학교, 각종 범죄관련기관, 민간경비업체, 연구소 등 방화범죄 대응기관이 상호 정보교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정보교류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²⁸⁾

무엇보다도 소방, 범죄심리학, 경찰, 법조계, 보험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방화에 대한 연구와, 통계, 범죄심리분석, 방화범죄 방지 홍보활동, 방화범죄 감시 및 응시시스템 개발, 우리 지형과 실정에 맞는 방화범죄 대응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²⁹⁾

4.2.5 상황별·지역별 대응시스템 구축

방화는 발생상황이 다양하고 또한 지역별 발생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는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지역 감시 및 예방활동,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축적된 자료 및 실시간 현장 취득 정보교류 및 현장지휘·통제, 방화예측시스템 기동이 중요하다. 시스템 자체의 업무내용은 광역과 관할 감시 시스템으로 24시간 감시와 정보수집 및 상황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지역별 상황 대처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방화범죄는 지역별 특수사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요즘 지하철 방화가 종종 발생하는데, 지하철이 있는 도시의 경우에는 지하철 방화범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4.3 조사·수사기법의 개선

4.3.1 현장 조사능력의 강화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화재와 함께 소실될 뿐만 아니라 목격자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범죄유형이다. 또한 진화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현장보존의 곤란하여 화재의 원인이 방화인지 실화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 때문에 현재와 같이 화재전문 전담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이 없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화재원인의 판정은 책임소재가 불문명해지고 자칫 방화를 실화나 원인불명의 영구미제 사건을 둔갑시킬 수 있다.³¹⁾

방화범죄는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자행되므로 인명피해가 목적이거나 이미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한 2차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초기 화재조사에 임하는 화재조사요원들과 법집행기관 요원은 발견된 시체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방화범죄임을 확인하는데 즉각적인 단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거물에 대하여 일정부분 검안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법의학적 지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³²⁾

특히 화재원인조사에 있어서는 공조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화재조사에 있어 초동단계부터 현장조사나 화재감식을 실시할 때 화재조사전문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조사전문가 등이 공조하여 화재원인(방·실화)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

²⁷⁾노계완, 앞의 논문, pp. 65.

²⁸⁾노계완, 앞의 논문, p. 67.

²⁹⁾노계완, 앞의 논문, p. 76.

³⁰⁾노계완, 앞의 논문, p. 71.

³¹⁾노계완, 앞의 논문, p. 76.

³²⁾노계완, 앞의 논문, p. 81.

는 조사의 공조체제 확립이 필요하다.³³⁾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방관에게 수사권이 없다.³⁴⁾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화재의 조사권과 방화사건의 수사권이 소방에 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소방관은 권총까지 지급받아 촉용하고 근무한다. 화재조사를 통해 방화의 의심이 있는 화재는 엄밀한 증거조사를 거쳐 법정으로 이어지며 방화에 대한 법적 기소는 소방단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³⁵⁾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화재에 관한 전문조사를 받은 소방관이 일정부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인조사를 위한 기술의 과학화와 함께 보다 유용한 화재감식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사관 및 소방관, 검사, 판사, 보험조정인을 비롯한 보험업자 등의 관련인들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사의 미숙으로 인하여 방화사건을 전기누전 등의 원인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³⁶⁾

또한 방화범죄는 목격자가 없고 화재에 의하여 증거가 소실되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운 범죄이며 수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식전문가 및 경험 있는 수사관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방화수사전담반에 의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때 방화범의 검거율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³⁷⁾

4.3.2. 과학수사 기법개발

방화범죄는 나날이 증가하며 교묘해지는 추세이며 완전범죄를 위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지능범의 복잡 미묘한 범죄수법과 이에 대응하는 법집행기관의 총력 대응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물이 거의 남지 않거나 남아도 아주 희미한 흔적에 불과한 특수사건임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과학수사기법의 도움이 절실

한 형편이다. 이러한 과학적 수사기법의 종류와 적용 방법을 방화범죄 전담요원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찮아 보이는 단서일지라도 놓치지 않고 수거하여 궁극적으로 그 사건이 방화임을 밝히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4.3.3. 방화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작성

방화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방화범죄에 대한 통계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화재통계년보’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이 있다. 이러한 통계들로서는 방화범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다. 화재통계년보의 경우 각 소방서에서 집계된 통계를 모아서 발행하고 있는데, 소방서에게 화재를 분류함에 있어서 통일적인 분류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성이 철저히 배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재통계년보는 방화의 동기를 가정불화, 주벽, 정신이상, 싸움, 비관자살, 기타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타의 2003년의 경우 2,017건으로 전체원인의 62.6%를 차지하고 있어 방화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범죄분석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류체계가 범죄의 일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방화범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간과할 수 있고, 그 결과 정확한 실태 및 심각한 암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³⁸⁾ 따라서 방화범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수사기관에서부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이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4 예방적 차원의 개선

4.4.1 환경적 측면의 강화

방화범죄의 통계에서 보듯이 방화범죄는 주택과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건물의 공간구성과 건축재료의 방재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화

³³⁾최종태, 앞의 논문, p. 400.

³⁴⁾현재 소방기본법 제31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³⁵⁾박호운, “긴급구조·구급체계 개선 정책연수”, 긴급구조·구급체계 정책연구 결과, 정책연구단, 1999, p. 252 참조.

³⁶⁾최인섭/진수연, 앞의 책, p. 103.

³⁷⁾최인섭/진수연, 앞의 책, p. 105.

³⁸⁾최인선/진수연, 앞의 책, pp. 100-101; 이기준, 앞의 논문, p. 58.

재발생시 대응해야 한다. 방화범죄 대응형 건축은 가연성 내장재 사용을 최대한 줄여 발화요인을 절감시키는 계획을 해야 하며, 발화가 되더라도 최소 구역에서 연소되고 인접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는 불연 내장재 등을 신설하는 동시에 화재구역으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위기상황에서 인간본능을 이용한 피난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화재발생시 방화구역 내에 격리되어 전소 전 초기에 진화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축설계는 없을 것이다.³⁹⁾ 또한 방화가 되더라도 소방시설이 완벽하다면 기계적 작동에 의한 경보로 감지되고 자동적 진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이나 방화설비, 방역 등 연소의 억제나 소화기능을 하는 기기와 CCTV와 같은 방역기기에 대한 완벽한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한 대응책이다.⁴⁰⁾

또한 건축물의 건축계획, 설계시점에서 경비실의 대치, 단지 주변의 지형여건에 따라 취약개소 등 확충 등 외관상의 방범시설 강화와 주간 단지 주동을 방범상의 효과를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범인의 접근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며, 주변 녹지공간에 울타리 치기 등 영역성 확보와 경계시설의 설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의 방범기기의 설치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범죄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⁴¹⁾

특히 건물관리는 외부 방호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관리가 허술한 건물일수록 어린이나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부랑자들의 노숙장소로 이용될 수 있으며, 방화광의 손쉬운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는 방화범죄의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⁴²⁾

이 밖에 사업장의 경우 야간에 주로 방화화재가 발생함으로 야간주변 감시체계 정비 및 사업장 내·외부의 불연재사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환경 정비 및 소화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최근 들어 차량방화가 증가추세이므로 노상주차를 가급적 피하고, 차고 및 주차장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4.4.2 예방활동의 강화

(1) 방화범죄에 대한 국민홍보

종전부터 방화범죄에 대해서는 방화의 범죄적 동기

에 대해 고려하기보다는 방화를 저지른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결함에 대해 생각해왔기 때문에 방화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화범죄 대응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방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방화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방화범죄 대응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모두가 방화범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특히 방화범죄의 예방과 상황발생시 조기 수습 및 방화범 검거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⁴³⁾

또한 방화범죄와 관련한 사법기관과 소방방재청, 관련학계, 보험업계 등 모든 기관이 가장 먼저 시행할 일은 방화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한 본격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방화범죄 대응기관의 권고,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지원은 궁극적으로 방화 위험성 홍보를 통한 방화범죄 예방운동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그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화범죄의 이러한 위험성이 공공에게 홍보되어 방화범죄에 의한 막대한 피해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될 때 방화범죄를 예방하고 자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화의 유형과 형벌의 상관관계를 대조하여 실증적인 범죄사건을 기초로 하여 방화에 관한 홍보에 임할 때 예비방화법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을 것이며, 방화법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폭넓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⁴⁴⁾

(2) 사회복지적 대응

최근 알콜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한풀이식 방화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 대책이 요구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체계 확립과 치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방화의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환자 또는 자살경향이 강한 환자에 대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한 적절한 개입과 지역에 독거하는 노인들의 혈황파악 및 지원체계 등 사회구성원 및 소외되거나 환자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복지행정에 충

³⁹⁾노계완, 앞의 논문, p. 109.

⁴⁰⁾최종태, “민간차원의 방·설화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7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4, p. 496.

⁴¹⁾최종태, “방화범죄의 특성과 예방에 관한 연구”, 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01, p. 43.

⁴²⁾노계완, 앞의 논문, p. 112.

⁴³⁾노계완, 앞의 논문, p. 75.

⁴⁴⁾최인섭/진수연, 앞의 책, pp. 103-104.

실하여 직·간접적으로 방화범죄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⁴⁵⁾

방화범죄인 다수는 경제적 하류층이나 저학력자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지칭되는 사람들로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의 충족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방화범죄자들 역시도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복지정책은 방화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⁴⁶⁾

(3)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사회 자율방범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 방범, 방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범죄 및 화재의 두려움을 감소하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방화, 방화환경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단체의 자발적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기존의 주민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와는 달리 주민, 시민단체, 자자체, 화재보험회사, 학계, 언론 등 안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상호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지역 등과 합의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체로서 지역사회 안전문제 실천에 참여하고, 관계 공무원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 협조함으로써 민간 파트너쉽에 대한 공동 생산적 협력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⁴⁷⁾

5. 결 론

방화범죄는 이제 간단한 흥미의 사건거리가 아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의 위험범으로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방화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화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 방화범죄는 국민적 관심도에 따라 통제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방화범죄를 한낱 정신병자가 저지르는 범죄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그에 대한 의사표시로 저지르는 범죄로 보면 안 된다. 이미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무관심이 얼마나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오

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화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발생할지 도 모르는 대형참사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

먼저 국가는 입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각 기관별 대응시스템을 일원화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방화범죄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방화범죄자를 철저히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에서는 방화범죄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고 방화예방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여 방화범죄의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2000).
2. 이상현, 범죄심리학(제4판), 박영사(2004).
3.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2004).
4. 최인섭/진수연,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93).
5.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2004).
6.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법문사(2003).
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2004).
8. 행정자치부, 2003년도 화재통계연보(2004).
9. 김광일, "방화범죄의 분석과 정책방향", 방재와 보험, 한국화재보험협회(1998).
10. 김종한, "방화화재 대책", 방재와 보험, 한국화재보험협회, 1998·가을호.
11. 노계완, "방화범죄의 실태 분석과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12. 박형민,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소식 제8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1/2월호.
13. 이기진, "방화범죄와 그 대응방안", 충북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14. 최종태, "민간차원의 방·실화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7호, 한국경호경비학회(2004).
15. 최종태, "방화범죄의 실태와 대책·관심도와 동기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경호경비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1997).
16. 최종태, "방화범죄의 특성과 예방에 관한 연구", 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한국화재·소방학회(2001).

⁴⁵⁾김종한, "방화화재 대책", 방재와 보험, 한국화재보험협회, 1998·가을호, p. 35.

⁴⁶⁾박형민, 앞의 논문, pp. 34-35.

⁴⁷⁾최종태, 앞의 논문(2004), p. 491.